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 4. 9. 10시 경	상담유형	[] 방문 [x]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소속 (주소)	팀	
	생년월일	19 . . .	
	연락처	064-7 -	

상담 내용

- 제주연구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답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는 아래와 같으므로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 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 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 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위 공공기관의 소속기관도 포함되나, 산하기관 등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 4. 12. 15시 경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강	생년월일
	소속 (주소)	팀	연락처
			19 . . . 064-71 -

상담 내용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참여가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청렴시민 민관협의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02호)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로서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Q: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 5. 21. 9시 경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생년월일
	소속 (주소)	팀	연락처
			064-7- -

상담 내용

- 육군사관학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
- 외부강의 사전신고방법 문의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문의 결과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와 군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확답을 주기 애매하다는 의견이었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것으로 강의자와 협의 완료함.
- 외부강의등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임직원행동강령 관련 규정과 기존 접수사례를 공유함.

2019년 5월 21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인명 도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9. 5. 31. 10시 경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양	1 . . .	
	소속 (주소)	연락처	
	팀	064-7 -	

상담 내용

-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업체 대표에게 해당 업체 제품 샘플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의 범주는 아래와 같으므로 샘플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임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8.>
 -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019년 5월 31일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김 미 정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